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7

발의연월일: 2020. 7. 16.

발 의 자 : 홍정민 · 권칠승 · 고영인

김병욱 • 민형배 • 홍익표

김윤덕 · 강준현 · 이용우

김홍걸 • 인재근 • 조정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사건으로 체육계 내부의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다시금 확인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속한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를 이행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아 체육단체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할 우려가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기능을 부여함 과 동시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제3항제2호 및 제18조의4제2항).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제2호 중 "상담"을 "보호·상담"으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 후단 중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를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
립) ①・② (생 략)	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③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해자에 대한 <u>상담</u> ·법률	2 <u>보호·상담</u>
지원 및 연계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①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	②
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	
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u>요구를 받은</u>	<u>체육단체는 정</u>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야 하고
게 보고하여야 한다.	
	<u>.</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